

1. 개정이유

현행 건축물 관리비 명시기준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관리비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에 대해 예시규정만 두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광고업체에서 관리비 표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외 포함되는 비목을 나열하고,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(안 제6조제1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

일부개정고시안

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“관리비”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(준주택을 포함한다)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가.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(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- 1) 일반(공용) 관리비(청소비, 경비비, 승강기유지비 등)
- 2) 전기료
- 3) 수도료
- 4) 가스사용료
- 5) 난방비
- 6) 인터넷 사용료
- 7) TV 사용료

8) 기타관리비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,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관리비”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<u>관리비의 월 평균액을 표시하되, 그 외의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(예시) 다세대주택의 경우, 관리비 매월 4만원, 수도료 매월 1만원</u></p>	<p>제6조(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·광고 명시사항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“관리비”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<u>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(준주택을 포함한다)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가.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(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는 이를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중개의뢰인이</u></p>

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1) 일반(공용) 관리비(청소비, 경비비, 승강기유지비 등)

2) 전기료

3) 수도료

4) 가스사용료

5) 난방비

6) 인터넷 사용료

7) TV 사용료

8) 기타관리비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,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.

12. (생략)

12. (현행과 같음)